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공고 제2024-0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주)모바일테크에서 시행하는「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25.

(주)모바일테크 외 26개사 대표이사 전수근

- 아 래 -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시 행 자 : (주)모바일테크 외 26개사
   다.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5번지 일원
   라. 사업규모 : - 구역내 : 315,147.6㎡
   - 구역외 : 진입도로 기정) 7,269.9㎡ → 변경) 7,310.9㎡ (증 41㎡)
   마. 사업기간 : 2016년 2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2. 보상 토지 및 물건 내역
   가.「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나.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세부 내역은 붙임 토지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 기간 중 아래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울산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7. 25. ~ 2024. 8. 8.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보상사무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902호(☎010-8456-5675)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3)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토지보상법」 제68조 등에 의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후 현금보상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보상액은「토지보상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보상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다. 감정평가법인의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공탁 및 소유권 이전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나. 영농보상 등에 관하여는 손실보상협의시 관계 서류 및 사실 관계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협의할 예정이며, 미분할 필지는 분할 측량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010-8456-56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